용인특례시 함께 만드는 미래	법률동향	2026. 10. 29.(목) 법 무 과 장 이명희(☎32030) 법무행정팀장 김경희(☎33724) 주 무 관 김덕영(☎33235)

11월 주요 시행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1. 9.]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 건축법 -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함(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5 제1항 및 제3항).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함(제61조제1항).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함(제80조제2항 및 제5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3 신설)

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 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제 8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의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6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체육인 복지법 –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095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폐기물관리법 –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함(제14조제8항제3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여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신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제25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제27조의2제2항제2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18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은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 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16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를 광복 전후로 구분하여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요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의사법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3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를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며,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방지법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제26조제1항 전단).

마.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2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56조제3항 신설).

사.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제76조 및 제79조).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신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34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나.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신설 등).

다.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절차를 확대함(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전세사기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요청을 받으면 경매절차의 유예·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14항·제15항 신설).

마.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제25조제4항).

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매입 절차를 마련함(제25조의3).

아. 공공주택사업자는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제25조의6제7항 신설).

자.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 관련 조사 및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 등을 신설함(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 신설).

차.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함(제25조의13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등의 체납 내역 조사 및 조치, 소방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및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4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제1항).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26년 8월 19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된 ‘법인택시 주40시간제’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 유예하되,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주40시간제’ 적용 사업구역은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퍼센트 이내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9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43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7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하고, 규제합리화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5 신설).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 11. 13.] [대통령령 제36754호, 2026. 10. 1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정산방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히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소지원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정함.

다.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1)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선지급금으로 정함.

2)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 금액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선지급 및 최소보장금·선지급금의 반납, 조사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

1)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반납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76호, 2026. 5.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유통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체육인 복지법 –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75호, 2026. 5.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의 시행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마.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7호, 2026. 5.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686호, 2026. 5. 26.,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제1조)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함.

4)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에 평의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 공유재산 등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를 지원하고, 매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및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 실습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을 규정함.

5)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 면허를 내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6)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도록 함.

8)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국내외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3호, 2026. 5. 2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6호, 2026. 5. 2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 2026. 11. 30.]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제49조의20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1 신설).

바. 국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제3호).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